

‘신고성 건설’의 ‘소가야의 기적’ 우리가 이루어 냈시다

# 2004年度 主要業務計劃

고 성 군  
(당항포관리사무소)

# I. 基本現況

## □ 機構 및 定·現員

담당별	계	일반직						기능	청경	일용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관리	안내	
개	정원	19	6	1	1	1	2	1	3	4	5	1
	현원	18	5	1	1	2	1		3	4	5	1
관리담당		18	5	1	1	2	1		3	4	5	1

## □ 主要 分掌事務

담당명	주요업무
관리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행정</li> <li>○ 대표관리</li> <li>○ 시설관리</li> <li>○ 관광안내</li> <li>○ 환경미화</li> </ul>

## □ 觀光地 利用料 現況

(단위 : 원)

입 장 료(자연사,수석 포함)			시 설 사 용 료					
구 분	개 인	단 체	주 차 료		야 영 료		컨벤션홀	
어 른	1,000 (1,500)	900 (1,400)	이 룰	400	소형천막 (10인이하)	2,000	4시간 기준	50,000
청소년 군 인	800 (1,000)	700 (800)	승 용	1,500				
어린이	500 (700)	400 (500)	버 스	3,000	대형천막 (11인이상)	4,000	8시간 기준	100,000
			화 물					
비 고	( )내 자연사·수석전시관 동시관람료							

## □ 主要施設 現況

구 분	계	공공시설	숙박시설	상가	운동오락	휴양문화	기타
토 지	348,464m <sup>2</sup>	61,243	13,555	17,455	64,419	49,937	141,855
건물	동수	35	11	2	7	5	10
	면적	26,514m <sup>2</sup>	862	13,835	7,639	2,089	2,089
시설내역		관리소1 화장실7 오수처리장 소각장1 진입광장	가족호텔 야영장	식당2 매점3 기념품1 보트장	모험놀이장 선착장 광장 구기장 야외공연장	기념탑 기념관 사 당 피크닉장 현충탑 정원석공원 야외무대 자연사박물관 수석진기관 컨벤션홀	녹지

## □ 委員會 現況

위원회명	위원수	위원장	간사	기능	개최횟수
당항포 승충사 제전 위원회	15명	제명수	이명호	당항포대첩 제전향사 봉향 (매년 4월 23일)	수시
당항포 축제 위원회	20명	박충응	당항포 관리 사무소장	당항포관광지 축제 주관 및 관광지 활성화 자문	수시

## □ 觀光客 및 收入現況

○ 관광객 현황

(2003. 12. 31기준)

년도별	1999	2000	2001	2002	2003
인원(명)	328,348	337,133	350,585	323,510	286,785

○ 년도별 수입현황

(2003. 12 31. 현재)

구 분	수 입(천원)										전년 대비 (%)
	계	입장료	주차료	자연사 전시관	수 석 전시관	자연사 · 수석 동시관람	컨벤션 홀	야영 료	승총사 성 금	기타 판매	
'03	296,438	159,358	77,682	29,113	10,722	13,692	800	736	1,466	2,866	▽13.
'02	343,538	188,601	89,091	35,931	18,625	-	1,730	784	1,689	7,086	17.3
'01	292,747	231,061	70,495	50,046	-	-	-	452	2,477	-	8.8

※ 관광수요가 가장 많은 주말 잦은 우천 및 각종 행사시 무료입장 운영, 태풍피해로 인한 휴장 등으로 관광수입 감소

## II. 2004 主要業務 推進計劃

# 快適한 休息空間 造成

- 자연예술원과 모험어드벤처(어린이놀이시설)를 연결하는 산책로의 정비로 각 코스간의 동선연결 및 휴식공간 제공
- 수려한 해안경관을 바탕으로 해안 백사장을 연장하여 해안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 마련으로 하절기 관광수요에 부응

## □ 推進概要

- 산책로 정비
  - 사업량 : 산책로 계단 및 편의시설(L=200m, B=1.2m)
  - 사업비 : 6,000천원
- 백사장 모래부설
  - 사업량 : 모래부설 1.2톤(L=120m, B=20m)
  - 사업비 : 30,000천원

## □ 推進計劃

- 산책로 정비
  - 수목 및 산책로 정비, 벤치 등 편의시설 설치
  - 계단정비시 방부목 구입하여 자체 인력 활용하여 시공
- 백사장 모래부설시행방법
  - 태풍피해로 인한 유실 부분 보완
  - 기부설 구간을 연장하고 해안산책로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관리

## □ 期待效果

- 자연예술원과 어린이 놀이시설 간의 산책로 정비로 산림휴식공간 제공 및 각각의 관광코스를 연결하는 고리 마련
- 관광객 및 어린이들에게 해수욕 및 갯벌체험의 기회제공으로 하절기 관광수요 충족

# 함께하는 祝祭한마당 開催

당항포대첩 승전을 기념하는 당항포 대첩축제와 정월대보름민속행사를 참여와 체험의 축제로 승화시켜 새로운 관광문화 개발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

## □ 推進概要

-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 개최시기 및 장소 : '04. 2. 5(정월보름), 당항포매립지
  - 주 관 : 회화면대보름회
- 당항포대첩축제
  - 개최시기 및 장소 : '04. 7월경(이틀간), 당항포관광지 일원
  - 주 관 : 당항포축제위원회

## □ 推進計劃

- 정월대보름민속행사
  - 참여예상인원 : 10,000명
  - 행사내용
    - 달집태우기, 풍년기원제, 농악놀이, 먹거리장터 운영 등
- 당항포대첩축제
  - 참여예상인원 : 40,000명
  - 행사내용
    - 어린이와 연계한 미래지향적이며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체험행사 마련
    - 당항포대첩과 관련한 행사구성(해상 대첩재현, 가장놀이 등)

## □ 期待效果

- 축제를 통한 관광지홍보로 관광수익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 2006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홍보
- 당항포대첩의 역사적의미 재조명과 어린이들에게 애국애족 정신 고취
- 민족고유의 명절인 정월대보름행사 추진으로 전통문화 계승 발전



# 老朽施設物 整備 및 補修

- 당항포대첩 전승기념탑의 부식부분을 정비 및 보수하여 경건하고 위엄있는 성역이미지 제고
- 관광객 편의시설과 안내표지판의 목재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방부작업으로 사용기간 연장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

## □ 推進概要

- 전승기념탑 정비('86년 완공)
  - 사업량 : H=20m, W=2m, T=1m(재질 : 석재 및 청동)
  - 사업비 : 8,000천원
- 편의시설 방부작업
  - 사업량 : 자연사박물관 창호 외부시설 및 야외 소공연장, 파고라, 원두막, 안내표시판, 의자 등
  - 사업비 : 5,000천원

## □ 推進計劃

- 전승기념탑 정비
  - 청소용역업체 위탁하여 시멘트 부식물 및 석재 청소
  - 2년단위 정기적인 청소로 부식 및 훼손 방지
- 편의시설 방부작업
  - 방부목 구입하여 자체인력 활용 정비 및 도색
  - 자연사박물관 창호 등 위험 시설물은 전문업체 도급 시행

## □ 期待效果

- 전승기념탑의 대대적인 정비로 성역으로서의 위엄 제고 및 어린이들에게 충무공의 얼 계승 및 애국정신 함양 기여
- 시설물의 정기적인 방부작업으로 사용기간 연장 및 예산절감
-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편리한 관광환경 제공으로 다시 찾는 관광지 정착

# 리노베이션 弘報

- “소년 이순신”과 “공룡화석”이라고 하는 두 개의 테마를 가진 차별성 있는 당항포관광지로 변화
- 당항포관광지 입구에 리노베이션 추진에 따른 홍보 안내판을 설치하여 관광지 홍보 및 관광객 불편해소

## □ 推進概要

- 리노베이션 홍보 안내판 설치
  - 사업량 : 1개소
  - 규 격 : 4.0m × 3.0m
  - 재 질 : 스텐레스 스틸, 그래픽 실사

## □ 推進計劃

- 변화될 당항포관광지의 모습을 홍보안내판을 설치하여 사전홍보하여 꼭 한번 찾고싶은 관광지로 인식제고

## □ 期待效果

- 당항포관광지 리노베이션 사업계획을 사전 홍보하여 관광객들의 기대와 관심을 유발
-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기반 조성

# Ⅲ. 特 殊 施 策

# 家族과 함께하는 어린이날行事

어린이날 가족단위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고 있으나 함께 할 수 있는 행사가 부족하여 단조롭게 보내다 가는 경우가 많아, 온가족이 함께 관람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여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신나는 관광지로 인식시켜 다시 찾을 수 있는 계기 마련

## □ 推進概要

- 일시 및 장소 : '04. 5. 5(어린이 날), 당항포관광지 광장
- 행사내용 :
  -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참가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  
· 도예체험, 퀴즈대회, 어린이장사씨름대회, 페이스페인팅, 장기자랑 등
  - 함께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공연행사  
·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주축이 된 다양한 공연 및 시범대회 등
- 소요예산 : 10,000천원

## □ 推進計劃

- 타 지역축제와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 발굴
- 행사비용 절감과 어린이들에게 발표의 장 제공위해 공연은 주로 관내 초등학생들과 학원생들의 발표대회로 구성
- 참가자들에게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간단한 경품 제공하여 참여동기 제고

## □ 期待效果

- 어린이날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 개최로 어린이날 정례적인 방문코스 정착 도모
- 차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이벤트를 제공하여 장기적인 관광객 유치 효과 기대
- 공룡나라어린이큰잔치와 2006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연계 홍보

#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안

의안번호	제29
------	-----

제출년월일 : 2004. 1. 6.

제 출 자 : 고성군수

## 1. 개정사유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에 위한 동계훈련합숙소건립과 공설운동장 내 육상트랙 우레탄포설 공사의 완료로 체육시설 사용료의 징수 및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 2. 주요골자

가. 체육시설의 정의 정리(안 제2조)

○ 보조경기장, 우레탄육상트랙, 동계훈련합숙소 추가

나. 사용허가 방법의 변경(안 제3조 제3항)

○ 사용료 납입 후 영수증으로 같음

다. 사용료의 구분방법 변경(안 제10조 제5항)

○ 기본사용료, 전용사용료, 이용료, 부대시설사용료 등으로 구분

라. 초과사용료 납부방법 변경(안 제12조 제1항 )

○ 초과사용료는 지정장소에 납부하고 1시간 미만인 때는 1시간으로 본다

마. 수수료의 징수 변경(안 제24조 )

○ 500원 상당의 고성군 수입증지 첨부

바. 체육시설 사용료 조정

○ [별표1, 2, 3] 조정(안) 참조

## 3.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03. 12. 5-2003. 12. 24, 특기할 사항 없음

## 4. 본 문

○ 덧붙임과 같음

#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공설운동장, 체육관”을 “공설운동장, 체육관, 보조경기장, 우레탄육상트랙, 동계훈련합숙소”로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연습)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한 후 영수증으로 허가에 갈음한다.

제10조 제1항중 “제9조 제1항의 구분에 의하여”를 “기본사용료, 전용사용료, 이용료, 부대시설사용료 등으로 구분하여”로 하며 제2항을 삭제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전용사용자가 부대시설 설비를 위해 전용사용일 전의 사용 기간은 해당시설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제11조제3항중 “제1항의 사용료의 정산은 관계 공무원 입회하에 실시하고 산출된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음에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거 모금하는 기금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2조 제1항중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를 “초과사용료 납부방법은 지정장소에 납부토록 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는 1시간으로 본다”로 한다

제13조제3호중 “불우소년”을“불우소년·소녀”로,“장애인”을 “장애인을 위한 행사”로 한다

제13조제4호중 “등록된 체육동호인단체”를 “고성군에 등록된 체육동호인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별표3의 규정에 의한 500원 상당의 고성군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표1, 2,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 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체육시설이라 함은 <u>공설운동장, 체육관</u>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p> <p>2.~12. (생략)</p> <p>제3조(사용허가) 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u>개인이 이용(연습사용)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은 교부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한다.</u></p> <p>제10조(사용료)① <u>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제9조 제1항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1과 같다.</u></p> <p>② <u>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전용사용, 이용, 중계사용, 상업사용 등으로 구분하여 정한다.</u></p> <p>③ (생략)</p> <p>④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u>체육시설이라 함은 공설운동장, 체육관, 보조경기장, 우레탄육상트랙, 동계훈련합숙소</u>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p> <p>2.~12. (현행과 같음)</p> <p>제3조(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연습 등)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한 후 영수증으로 허가에 갈음한다.</u></p> <p>제10조(사용료)①-----</p> <p>-- <u>기본사용료, 전용사용료, 이용료, 부대시설사용료 등으로 구분하여 별표1과 같다.</u></p> <p>② (삭제)</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u>전용사용자가 부대시설 설비를 위해 전용사용일 전의 사용기간은 해당시설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사용료로 징수한다.</u></p>

현행	개정안
<p>제11조(관람수입에의한사용료징수)</p> <p>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제1항의 사용료의 정산은 관계 공무원 입회하에 실시하고 산출된 사용료를 징수한다.</p>	<p>제11조(관람수입에의한사용료징수)</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거 모금하는 기금은 제외한다.</p>
<p>제12조(초과사용료)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토록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p>	<p>제12조(초과사용료)① ----- ----- ----- 초과 사용료 납부방법은 지정장소에 납부토록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는 1시간으로 본다.</p>
<p>② (생략)</p> <p>제13조(사용료의 감면) (생략)</p> <p>1. (생략)</p> <p>2. (생략)</p> <p>3. 불우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어린이, 경로자, 장애인</p> <p>4. 등록된 체육동호인단체</p> <p>5.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3조(사용료의 감면)(현행과 같음)</p> <p>1.(현행과 같음)</p> <p>2.(현행과 같음)</p> <p>3. 불우소년·소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어린이, 경로자, 장애인을 위한 행사</p> <p>4. 고성군에 등록된 체육동호인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p> <p>5.(현행과 동일)</p>
<p>제24조(수수료의 징수) 이 조례규정에 의한 체육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별표3의 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한다.</p>	<p>제24조(수수료의 징수) 이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500원상당의 고성군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한다.</p>



## 현 행

### [별표1]

#### 1. 기본사용료

시설별	시 기	사용구분	기준	사 용 료		비 고	
				평 일	공휴일 (토요일포함)		
실 내 체육관	조 간	체육경기	1회(1일)	8,000	10,000		
		체육경기외	“	15,000	25,000		
	주 간	체육경기	“	30,000	40,000		
		체육경기외	“	60,000	100,000		
	야 간	체육경기	“	12,000	15,000		
		체육경기외	“	30,000	40,000		
구공설 운동장	조 간	체육경기	“	8,000	9,000		
		체육경기외	“	13,000	15,000		
	주 간	체육경기	“	30,000	35,000		
		체육경기외	“	50,000	60,000		
	야 간	체육경기	“	12,000	15,000		
		체육경기외	“	25,000	35,000		
신공 설운 동장	축구장	조 간	체육경기	1회(3시간)	60,000	80,000	축구장 및 육상 경기장을 동시 사용시 이를 합 산함.
			체육경기외	“	100,000	120,000	
		주 간	체육경기	“	120,000	150,000	
			체육경기외	“	200,000	250,000	
	야 간	체육경기	“	80,000	100,000		
		체육경기외	“	130,000	160,000		
	육 상 경기장	조 간	체육경기	1회(1일)	10,000	13,000	
			체육경기외	“	15,000	20,000	
		주 간	체육경기	“	40,000	55,000	
			체육경기외	“	60,000	80,000	
		야 간	체육경기	“	15,000	20,000	
			체육경기외	“	30,000	40,000	

※ 1시간당 초과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1/5 가산

개 정 안

[별표1]

1. 기본사용료

시설별	시 기	사용구분	기준	사 용 료		비 고	
				평 일	공휴일 (토요일포함)		
실 내 체육관	조 간	체육경기	1회(1일)	8,000	10,000		
		체육경기외	"	15,000	25,000		
	주 간	체육경기	"	30,000	40,000		
		체육경기외	"	60,000	100,000		
	야 간	체육경기	"	12,000	15,000		
		체육경기외	"	30,000	40,000		
구공설 운동장	조 간	체육경기	"	8,000	9,000		
		체육경기외	"	13,000	15,000		
	주 간	체육경기	"	30,000	35,000		
		체육경기외	"	50,000	60,000		
	야 간	체육경기	"	12,000	15,000		
		체육경기외	"	25,000	35,000		
신공 설운 동장	축구장	조 간	체육경기	1회(3시간)	60,000	80,000	축구장 및 육상 경기장을 동시 사용시 이를 합 산함.
			체육경기외	"	100,000	120,000	
		주 간	체육경기	"	120,000	150,000	
			체육경기외	"	200,000	250,000	
		야 간	체육경기	"	80,000	100,000	
			체육경기외	"	130,000	160,000	
	육 상 경기장	조 간	체육경기	1회(1일)	10,000	13,000	
			체육경기외	"	15,000	20,000	
		주 간	체육경기	"	40,000	55,000	
			체육경기외	"	60,000	80,000	
		야 간	체육경기	"	15,000	20,000	
			체육경기외	"	30,000	40,000	
	보 조 경기장	조 간	체육경기	1회(1일)	10,000	12,000	
			체육경기외	"	12,000	15,000	
		주 간	체육경기	"	20,000	25,000	
			체육경기외	"	30,000	40,000	
		야 간	체육경기	"	12,000	15,000	
			체육경기외	"	20,000	40,000	
	동 계 훈 련 합숙소	하절기	전지훈련	1일(1동)	30,000	30,000	
			전지훈련외	"	40,000	50,000	
		동절기	전지훈련	"	40,000	40,000	
			전지훈련외	"	50,000	60,000	

※ 1시간당 초과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1/5 가산

**【현행】**

2.전용사용료(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동시적용)

사용기간별	사 용 료	비 고
10일 이내	기본사용료 × 사용일수	
10일 초과	기본사용료 × 10일초과일수 × 0.9	10%할인
20일 초과	기본사용료 × 20일초과일수 × 0.8	20%할인

**【개정안】**

2.전용사용료(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동계훈련합숙소 동시적용)

**【별표2】**

**【현행】**

-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비율 : 관람수입액의 20%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동시적용)
- 단 할부사용료가 2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체육경기에 한하여 그 초과 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할인 징수한다

구	분	할 인
20만원 초과 50만원 까지		10%
50만원 초과		20%

- 관람료의 수입총액이 기본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기본액을사용료로 한다

**【개정안】**

-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비율 : 관람수입액의 20%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동계훈련합숙소 동시적용)

**【별표3】**

**【현행】**

- 수수료의 징수(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동시적용)

구	분	수 수 료 율
전용허가신청		군수입증지 300원
연습사용		없음

**【개정안】**

- 수수료의 징수(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동계훈련합숙소 동시적용)

구	분	수 수 료 율
전용허가신청		군수입증지 500원
연습사용		없음

# 고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의안 번호	640
----------	-----

제출년월일 : 2004. 1. 6.

제출자 : 고성군수

## 1. 제정이유

최근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이 전 사회영역에 확대되고 활동범위도 다양화 되어가고 있으며, 특히 각종 재난발생 등의 대형사건사고 발생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지원 및 자원봉사자의 보호·보상 등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대한 필요한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가. 자원봉사활동의 기본방향, 기본이념 및 활동범위(안 제1조 내지 제4조)
- 나.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군의 지원협력과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사업수행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 다. 자원봉사자의 등록·교육훈련사항(안 제12조 및 13조)
- 라.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안 제17조)
- 마.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보험가입, 실비지원(안 제19조 및 20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경상남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및 타 시·군 조례  
여성13290-10088(2000.02.07)호 및 여성65260-11258  
(2002.10.22)호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정조치 촉구
- 나. 입법예고 : 공고(2003.06.12~2003.07.0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4. 본문 : 덧붙임과 같음

## 고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을 정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정신과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자원봉사활동은 군민들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정신과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자원봉사자 스스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함양과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적극 참여하는 공동체의식의 확산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물질이나 금전적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4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2. 사회복지 및 주민보건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4. 교육 및 청소년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5.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6.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7. 재해·재난관리 및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8.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진흥에 관한 봉사활동
9. 인권옹호·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10.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1. 기타 공익사업수행 또는 군민복지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 등

제5조(군의 지원·협력) 군수는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자원봉사단체 등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등) ①군수는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성군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7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자 및 센터의 모집·교육·배치 및 기록 등의 전산관리사업
2.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
3. 자원봉사단체·학교·기업 또는 직장 등과의 자원봉사에 관한 공조사업
4. 기타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사업

제8조(위탁운영) 군수는 센터운영의 전문성 및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운영 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센터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단체협의회) ①자원봉사단체는 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명칭·조직 및 운영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③군수는 협의회로부터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공유재산의 사용)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 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 및 협의회가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군수는 제8조에 의한 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에는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및 운영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관련서류를 검사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 ①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 수요자는 센터에 등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자(이하 “센터등록자”라 한다)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③등록방법 및 절차는 규칙에서 정한다.

제13조(교육훈련)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소양과 전문교육 훈련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할 수도 있다.

제14조(자원봉사요청) ①자원봉사가 필요한 자원봉사수요자는 센터 및 자원봉사단체에 자원봉사자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센터 및 자원봉사단체는 인적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원봉사자의 전공·소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배치할 수 있다.

제15조(자원봉사증서) 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자 중 일정기간 계속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6조(등록취소) ①군수 또는 센터의 장은 등록된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등록된 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미미한 것으로 판명된 때
2.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가 봉사활동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 또는 자원봉사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누설한 때
4. 자원봉사증서를 허위로 기재·발급하거나 이를 위조 또는 변경한 때
5. 기타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 또는 센터의 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7조(경비지원) ①군수는 센터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 프로그램개발 및 자원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고성군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센터는 제1항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계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센터는 제3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계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8조(포상)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하여 직접 포상 또는 타 기관에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제19조(보험가입지원) 군수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가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해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실비보상 등) 군수, 센터의 장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교육 및 행사참석, 봉사 등을 실시하게 하였을 경우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소요되는 필요한 물품 또는 실비(교통비, 식대 등)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자원봉사활동의 교류) 군수 및 센터의 장은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을 위하여 국내의 자원봉사기구와 상호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교류진흥을 할 수 있다.

제22조(마일리지제) ①군수는 자원봉사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실적에 따라 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무료이용 및 할인 등에 우선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

2. 체육시설
3. 공영주차장
4. 박물관
5. 관광지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립된 센터 및 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